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임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한다.

제16조 제3항 단서중 "(기획관리실장)"을 "(예산담당관 또는 보건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